

허가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재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사항	① 허가번호			
	② 재허가(한정) 기간			
	자료보호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제조
[] 수입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2.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화학물질의 용도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다.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라.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 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①란은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②란은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전 허가기간보다 짧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